

2023 예술지원 매칭펀드

변경사항 안내

[운영규정]

내용	2022년	2023년
중복 지원	<p>타 기관 매칭펀드 사업과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당해 연도에 타 지역 메세나단체 및 공공 문화예술기관이 운영하는 매칭펀드 사업의 수혜를 받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- 펀드교부금 재원의 출처가 다른 경우는 예외	<p>타 기관 매칭펀드 사업과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당해 연도에 타 지역 메세나단체 및 공공 문화예술기관이 운영하는 매칭펀드 사업의 수혜를 받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-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 <p>① 펀드교부금 재원의 출처가 국고보조금이 아닌 경우(자체 도비, 시비)</p> <p>② 지원 신청 사업의 내용이 다른 경우</p> <p>③ 매칭 기업이 다른 경우</p>
	<p>대표자가 동일한 단체 지원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기준, 단체명이 다른 경우 각 단체 별 지원 신청 가능	<p>대표자가 동일한 단체 지원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기준,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단체만 지원 신청 가능- 지원 선정 후 단체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, 대표자가 동일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취소

내용	2022년	2023년
지원금 입금 및 사용	<p>기업지원금 입금 기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기한 없음	<p>기업지원금 입금 기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지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 계좌로 기업지원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지원 취소
	<p>매칭펀드 수혜 단체 간 펀드교부금 지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제한 없음	<p>매칭펀드 수혜 단체 간 펀드교부금 지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수혜 단체 간 지급할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업지원금 또는 단체 자부담 예산으로 지출(펀드교부금 사용 불가)
	<p>개인 사례비/대표자 사례비 지출 (출연료, 연주료, 기획료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개인 사례비 : 지출금액 한도 없음- 대표자 사례비 : 전체 예산의 20% 한도 내 지출 가능	<p>개인 사례비/대표자 사례비 지출 (출연료, 연주료, 기획료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(개인 사례비) 펀드교부금 : 총액의 50% 한도 내 지출- (개인 사례비) 기업지원금 : 지출금액 한도 없음- 대표자 사례비 : 지출 불가

[지원규모]

구분	2022년		2023년	
	기업지원금 (상한액 없음)	문예기금 매칭지원 (최대 1:1 비율)	기업지원금 (상한액 없음)	문예기금 매칭지원 (최대 1:1 비율)
중소기업	최소 500만원~			
중견기업	최소 1,000만원~	최소 500만원~ ~최대 2,000만원	최소 500만원~	최소 500만원 ~최대 2,000만원 *대기업은 최대 1:0.5 비율
대기업	최소 1,500만원~		최소 1,000만원~	

- ▶ '매칭펀드 예술 심의위원회'의 결과에 따라 펀드교부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
- ▶ 대기업 : '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' 인증을 받은 경우 중소·중견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:1 적용

사업문의: A&B팀 김지훈 매니저(02-761-0858)

2023 매칭펀드 사업 회계검증수수료 변경 안내

[회계검증수수료 – 2023년도 개정]

사업규모(펀드교부금/기업지원금 개별 편성)	수수료
7백만원 미만	187,000원
1천 5백만원 미만	226,000원
1천 5백만원 ~ 3천만원 미만	302,000원
3천만원 ~ 4천만원 미만	360,000원
4천만원 ~ 5천만원 미만	390,000원
5천만원 ~ 6천만원 미만	541,000원

▼ 회계검증수수료 편성 예시

구분	지원 금액	검증수수료	비고
펀드교부금	1천 5백만원	302,000원	기업지원금 예산 내
기업지원금	3천만원	360,000원	662,000원 편성

2023 예술지원 매칭펀드 예산편성 가이드

■ 예산편성 기본원칙

구분	내용
회계연도 내 소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회계연도 내 모두 소진 원칙사업기간 연장 및 이월 불가
포괄적인 예산편성 지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사업비목별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필수예산목적의 부합성, 계정과목의 적합성 등 검토 필수
집행기준 및 방법 준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펀드교부금 : 연출, 무대제작 등 순수예술 활동비로만 지출 가능기업지원금 : 순수예술 활동비, 단체 운영비,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 지출 가능
예술단체 운영비 집행 (임대료, 직원 인건비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펀드교부금 : 예술단체 운영비 지출 불가기업지원금 : 총액의 8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출 가능
교통비 집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신청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이동에 한해 지출 가능
사례비 집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펀드교부금 : 총액의 5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출 가능기업지원금 : 편성/지출 한도 제한 없음
기업 교류협력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기업지원금의 20% 범위 내에서 기업과의 순수한 협력 프로그램에 지출 가능
대표자 사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편성/지출 불가

■ 예산편성 불가항목

-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설비 등 기본적 경비
- 사업준비 또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회의비(식비), 간담회비, 다과비 등의 경비 및 기념품 구입비**
- 행사답사비(교통비, 숙박비, 유류대 등) 준비 비용
-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 경비
- 경연대회 상금 성격의 비용
-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
- 단체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(*대표자가 실제 연출, 기획 등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지출 불가)**

※ 위 항목 중 협회가 사전에 승인한 사업의 경우는 제외함

■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

- 유통업소 : '한국표준산업분류'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통주점,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통주점
- 위생업종 : 미용실, 피부미용실, 샤우나, 안마시술소, 발마사지, 스포츠마사지, 네일아트,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
- 레저업종 :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스크린골프장, 노래방, 사교춤, 전화방, 비디오방, 당구장, 헬스클럽, PC방, 스키장
- 사행업종 : 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
- 기타업종 : 성인용품점, 총포류 판매점

■ 지원금 편성/집행 유의사항

- 회계연도 준수 원칙
 - 지원금은 회계연도(2023년) 내에 모두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한국메세나협회와 체결한 성실이행약정서 상의 예산계획 항목과 일치하도록 사용
 - 회계연도를 미준수하여 지원금 집행 시, 용도와 상관없이 지원금 전액 환수
※ 단, 협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 - 지원사업 계획의 변경사유 발생 시 ‘사업 및 예산변경신청서’ 제출 및 한국메세나협회 담당자의 승인 필수
- 계좌이체 혹은 지원금 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통해서만 집행
 - 펀드교부금 :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펀드교부금 전용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통해서만 집행
 - 기업지원금 : 기업지원금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혹은 전용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통해서만 집행
※ 현금 인출 및 사용은 불가하며 지원금과 단체 자부담 예산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 필요
※ 펀드교부금과 기업지원금 간 계좌이체 불가
※ 카드 영수증 제출 시 세부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필수 첨부
- 지원금 사전 집행 및 사후정산 금지
 -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부터 사업비 집행 가능
 - 지원금 교부 이전의 집행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며, 해당 금액은 지원금으로 대체 및 보전 불가능
 - 지원금을 일괄 인출을 통한 집행 금지
- 이자 / 이체수수료 / 집행잔액 관리
 - 이체 수수료, 가산세는 지원금에서 사용불가하며 자기부담금으로 집행
※ 단, 사전에 예산계획에 반영한 해외송금수수료의 경우 지원금에서 집행 가능
 - 기업지원금 및 펀드교부금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 및 이자는 사업비로 활용 불가
- 사례비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원천세 이행 의무
 - 출연료, 연출료, 강사료, 원고료, 인건비 등의 각종 사례비 지급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(소득세+지방세) 한 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· 위택스에 신고 및 세금 납부 필수
- 사례비 지급 시 계약서 작성 의무화
 - 인건비 및 사례비 지급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계약서 양식 활용 필수
 - 계약서 다운로드 경로 :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>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표준계약서
- 사례비 지급 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
 - 2020.12.10. “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령” 적용
※ 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따른 사례비 지급 시,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 가입 및 납부 필수
 - 고용보험은 문화예술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중 일정 수준의 월 평균보수 혹은 사례비를 지급받는 모든 예술인에게 적용됨
- 서류 보관의 의무
 - 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’에 의거하여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원본을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보관필수

관련 문의: 한국메세나협회 A&B팀 김지훈 매니저(02-761-0858)